

공개 자료

한·필리핀 FTA 상세설명자료

2023. 9.

관계부처 합동

목 차

1. 서문, 일반규정	1
2. 상품 무역	4
3. 무역구제	25
4.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29
5.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38
6. 경쟁	40
7. 경제 및 기술협력	44
8. 투명성	47
9. 분쟁해결	49
10. 예외	53
11. 제도 규정	55
12. 최종 규정	57

서문 주요 내용

-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대한 선언적 내용 포함
 - 양국의 긴밀한 관계, 시장·투자환경 창출, 경제협력 확대, 무역·경제성장 증진 및 고용기회 창출, 각 국의 발전단계 고려, 무역·투자 규칙 제정, 무역 장벽 제거, WTO상 권리·의무 존중, 양국이 당사자인 다자 및 양자 협정 존중 등

일반규정 주요 내용

- 일반규정에서는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협정의 목적,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의무의 범위, 일반정의 등을 규정
-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자유무역지대를 창설
- 목적
 - GATT 24조에 합치되게 상품 무역의 실질적 자유화 달성
 -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서비스 무역의 실질적 자유화 달성
 - 투자기회 상호 증대
 - 양국 경제에서의 경쟁, 특히 양국 간 경제 관계 관련 경쟁 증진
 - 소상공인·중소기업을 고려한 실질적 혜택 추구

- 혁신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협력 이니셔티브 개발
- 양 당사국이 합의한 분야에서 협력의 틀 수립

□ 의무의 범위

- 각 당사국은 지역·지방정부 및 당국, 그리고 정부로부터 권한 행사의 위임을 받은 비정부 기관이 이 협정을 준수할 것을 보장

□ 일반 정의

- 협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세(customs duties), 일(days), 조치(measure), 국민(national), 인(person), 영역(territory) 등 2개 이상의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
- 관세(customs duties)의 정의
 -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와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

※ 관세에서 제외되는 항목

- ①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 또는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 ②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③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 ④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 ⑤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모든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 국민(national)의 정의

- 한국 : 「국적법」상 대한민국의 국민

- 필리핀 : 개정되는 바에 따른 필리핀 헌법상 정의된 필리핀의 국민

○ 영역(territory)의 정의

한 국	필 리 핀
1) 한국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2)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영역 - 국가영역은 필리핀 자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

2

상품 무역

개요

-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상품의 일시 반입 면세 등 상품 시장접근 관련 원칙과 의무사항은 협정문 본문에 규정하고,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를 위한 양허유형은 부속서에 규정
- 특히, 수량제한, 수입허가, 수출입수수료,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관련 원칙과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 제도 도입 등을 규정

상품 협정문

1. 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2.4조)

-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점진적으로 인하 또는 철폐
- 부속서 2-가의 양허표에 따른 관세율보다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낮을 경우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적용 가능

2.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 (제2.5조)

-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별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위해 협의할 의무 부여

3. 농업 수출 보조금 (제2.7조)

- 농산물에 대해 예정된 수출 보조금 권리 철폐를 포함한 「수출 경쟁에 관한 2015년 12월 19일 각료회의 결정(WT/MIN(15)/45, WT/L/980)*」 재확인

* ①농업 수출보조 철폐, ②수출신용 최대 상환기간 설정, ③수출 독점으로 인한 무역 왜곡효과 최소화 및 노력, ④식량원조에 대한 규율(무상원조 원칙, 재수출 금지, 현물원조 지양 등)

4. 통과중인 상품 (제2.8조)

- 1994년도 GATT 제5조제3항과 「무역원활화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통과 중인 상품이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통관되도록 보장

<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

- ▶ 상품의 국제교역을 위해 국경에서 적용되는 기술적·법적 절차를 간소·단순화하는 일련의 조치로서, 선적 정보의 전자적 교환, 수출입문서의 단순화 및 통일, 국경관리 당국의 행정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다양한 국경절차가 여기에 포함됨(OECD)

5. 일시 반입 상품 및 견본품에 대한 면세 (제2.9조)

- 상품의 사용에 따른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소모를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아니하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명시된 기간 내 재수출될 의도로 일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 조건부 면세 반입 허용
-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품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

6. 상품무역 관련 비관세조치의 적용 (제2.11조)

-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 또는 이 협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

하고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해 수량제한, 비관세조치 채택 또는 유지 금지

-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그러한 효과를 가지는 어떠한 조치도 준비, 채택,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

7. 수입 허가 (제2.12조)

- 세계무역기구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에 따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고, 협정 발효 후 신속하게 기존의 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
- 가급적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1일 전 정부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공표

8. 수출입 수수료 및 형식 (제2.13조)

- 수출입 수수료 및 부과금의 세부사항을 즉시 공표하고 인터넷에 공개, 수입 관련 영사거래 요구 금지 등 의무 규정

9.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 (제2.15조, 부속서 2-나)

- 부속서 2-나에 규정된 필리핀산 농산물(바나나)에 대해서, 설정된 물량(trigger level)을 초과하여 수입될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형태의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Agricultural Safeguard) 발동 가능
- 단, 농산물 세이프가드 발동을 통해 인상되는 관세율은 최혜국(MFN) 실행세율 초과 불가

- 농산물 세이프가드와 ①제3장(무역구제)에 따른 양자 세이프가드, ②WTO 협정에 의한 다자 세이프가드, 또는 ③WTO 농업협정에 의한 특별세이프가드 조치는 동시 발동 불가

10.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2.16조)

- 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상의 권리와 의무 재확인
 -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는 이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 위생 및 식물위생 분야에서의 기술협력과 소통 장려

11. 상품무역위원회 (제2.17조)

- 제2장(상품 무역)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상품무역위원회 설치
- 상품무역위원회의 기능은 ▲ 관세 인하 또는 철폐 가속화 협의 등 당사국 간 상품무역 증진, ▲ 비관세조치 등 상품무역 장벽에 대한 검토, ▲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에 따른 양허표 최신화 조치 등을 포함

상품 양허 상세 내용

- 한-필리핀 FTA는 양국간 기발효 중인 한-아세안 FTA(2007.6월 발효)를 토대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한-아세안 FTA 고려시 품목수 기준 (한) 93.5% - (필) 94.9%, 수입액 기준 (한) 96.8% - (필) 97.6%의 자유화율 달성
 - * 한-필리핀 양국간에는 한-아세안 FTA를 통하여 품목수 기준 (한) 89.9% - (필) 76.5%, 수입액 기준 (한) 87.0% - (필) 84.7%의 자유화율 기달성
- 한-아세안 FTA 대비 필리핀측은 품목수 기준 18.5%p, 수입액 기준 12.9%p(8.4억불)를 추가 개방하고, 우리측은 품목수 기준 3.6%p, 수입액 기준 9.8%p(3.6억불)를 추가 관세철폐
 - 추가자유화: (한) 품 89.9% 수 87.0% → 품 93.5% 수 96.8%
(필) 품 76.5% 수 84.7% → 품 94.9% 수 97.6%
 - * 특히,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에서 양허제외했던 품목 2,638개(품목수 기준 23.5%, 수입액 기준 15.3%) 중에서 총 2,070개의 품목을 추가 개방(양허제외 품목 대비 품목수 기준 78.5%, 수입액 기준 86.1%)
- 최종적으로 한-아세안 FTA, RCEP(2022.2월 발효)까지 고려하여 양국은 품목수 기준 (한) 94.8% - (필) 96.5%, 수입액 기준 (한) 97.0% - (필) 97.6%의 자유화율 달성

< 한-필리핀 FTA 전체 상품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양허				필리핀 양허			
	품목수(개)		'17-'18년 對필리핀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전체	12,232		3,635,853,788		11,202		6,486,708,239	
한-아세안 FTA	10,994	89.9%	3,162,093,626	87.0%	8,564	76.5%	5,489,772,090	84.7%
즉시 철폐	170	1.4%	14,126,741	0.4%	634	5.7%	516,570,068	8.0%
3년 철폐	38	0.3%	15,888,142	0.4%	167	1.5%	11,373,010	0.2%
5년 철폐	52	0.4%	298,322,345	8.2%	259	2.3%	85,682,277	1.3%
7년 철폐	1	0.0%	15,444,440	0.4%	-	-	-	-
10년 철폐	80	0.7%	3,380,683	0.1%	47	0.4%	1,250	0.0%
15년 철폐	105	0.9%	9,685,787	0.3%	963	8.6%	223,091,199	3.4%
소계	446	3.6%	356,848,137	9.8%	2,070	18.5%	836,717,804	12.9%
최종 관세철폐율	11,440	93.5%	3,518,941,763	96.8%	10,634	94.9%	6,326,489,894	97.6%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7 (필리핀) AHTN 2017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참고: RCEP 고려시 한-필리핀 FTA 상품 양허 관세철폐 수준>

구분	한국 양허				필리핀 양허			
	품목수(개)		'17-'18년 對필리핀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전체	12,232		3,635,853,788		11,202		6,484,708,239	
한-아세안 FTA	10,994	89.9%	3,162,093,626	87.0%	8,564	76.5%	5,489,772,090	84.7%
RCEP 추가철폐	523	4.3%	72,851,004	2.0%	1,429	12.8%	522,989,898	8.1%
한-아세안 FTA + RCEP*	11,517	94.2%	3,234,944,630	89.0%	9,993	89.3%	6,012,761,988	92.8%
즉시 철폐	11	0.1%	257	0.0%	344	3.1%	196,196,765	3.0%
3년 철폐	27	0.2%	8,645,046	0.2%	-	-	-	-
5년 철폐	33	0.3%	284,343,377	7.8%	232	2.1%	83,422,895	1.3%
10년 철폐	3	0.0%	226	0.0%	-	-	-	-
15년 철폐	11	0.1%	330,229	0.0%	245	2.2%	38,006,529	0.6%
소계	85	0.7%	293,319,133	8.1%	821	7.3%	317,626,189	4.9%
최종 관세철폐율 (한-아세안 +RCEP +한-필리핀 FTA)	11,602	94.8%	3,528,263,763	97.0%	10,814	96.5%	6,330,388,177	97.6%

< 한-필리핀 FTA 상품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

한국 양허		양허 단계	필리핀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편직제의류(5%), 당류(3%), 제어용케이블(0/5%), 의류 약세서리(5%), 직물제의류(5%), 승용차(8%), 화물자동차(10%), 자전거부품(5%), 이륜차부품(8%), 선박용부품(5%), 선박용 엔진 및 그 부품(5%), 기타 석유제품(5%) 등	170	즉시 철폐	634	화물자동차(5%), 구리선(1%), 승용차(5%), 초산(3%), 의약품(1%), 오르토프탈산디옥틸(1%), 접착제(1%), 아세톤(1%), 텍스트린과 그밖의 변성성분(3%), 폴리카보네이트(3%), 자동차부품(5%), 철도차량부품(1%), 에틸렌프로필렌고무(1%), 저밀도에틸렌(3%), 초산비닐(1%), 건축용목제품(1%) 등
편직제의류(5%), 직물제의류(5%), 판유리(5%), 폴리에스터사(5%), 모사(5%), 당류(5%), 판유리(5%), 방모직물(5%), 질소비료(5%), 수산화나트륨(5%)	38	3년 철폐	167	통신선(5/0%), 된장(5/0%), 표백(5%), 순면사(5%), 감(10/0%), 장갑(5/0%), 폴리아미드(5%), 기타면사(5%), 두발용 제품류(10%), 일차전지(5/0%), 합성필라멘트사(5%), 비누(10%), 생지(5%), 언더셔츠(5/0%) 등
바나나(30%), 자동차부품(8%), 면류(5%), 화물자동차(10%), 곡류가공품(5%), 자동차부품(8%), 전기자동차(8%), 승용차(8%), 화물자동차(10%)	52	5년 철폐	259	가솔린 하이브리드(5%), 10인이상 화물차(5%), 자동차 부품(10%), 통신선(5/0%), 합판(10.4/5%), 섬유판(15/6.4/5/0%) 등
파인애플(기타조제)(36%)	1	7년 철폐	-	-
사탕(8%), 원당(3%), 야자유(3%), 세안용품(5%), 과일주스(5%), 브랜드(5%), 두발용 제품(5%), 위스키(5%), 저압케이블(0/5%), 합판(5%), 커피조제품(8%), 기타채소(5%), 바나나(플랜틴)(30%), 커피(8%), 곡류가공품(5%), 정밀화학제품(5%)	80	10년 철폐	47	신사복상의(5%), 스웨터(5%), 기타주류(5/0%), 기타농산가공품(7%), 분유(7%), 밀가루(5/7%), 퀴노아(7%), 토란(5%), 암(5%), 시금치(5%), 피조개(5/0%), 대구(5%), 참치(5%), 넙치(5%), 가자미(5%) 등
맥주(15%), 과일주스(5~40%), 기타과실(24%), 사료(40.4%), 기타당류(5%), 어류통조림(16%), 면류(5%), 참치(5%), 피조개(5%), 수목류(5%), 기타어류(10%), 조개(5%), 꽃게(16%) 등	105	15년 철폐	963	와이어하네스(30%), 편직물(5%), 기타플라스틱제품(5/15%), 골판지(5%), 참치(5%), 아연도강판(5%), 기타수산가공품(5%), 공기조절기(5%), 소주(5%), 인삼(5%), 기타주철(5%), 폴리메탄아크릴산메틸(5%), 기타문구(5%), 된장(7%), 무기류(15%) 등
갑오징어(냉동, 5%), 조개(5%), 게(11.2%), 체리(5%), 볼베어링(5%), 위스키(5%), 오리고기(14.4%) 등	146	관세 감축*	68	기타플라스틱제품(12%), 자기제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12%), 기타문구(15%), 스프링(15%), 차량용의자(15/30%), 양탄자(15%), 기타고무제품(5%), 대구(냉동)(10%), 갈치(냉동)(10%), 감귤(10%), 보리가루(10%) 등
	592	총 합계	2,138	

* 관세감축 : (한국 양허) 15년차까지 50% 감축, (필리핀 양허) ①8년차까지 33%감축, ②8년차까지 50% 감축, 또는 ③15년차까지 50% 감축

< 참고: RCEP 고려시 한-필리핀 FTA 상품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

※ 한-아세안, RCEP에서 미철폐된 품목 중 한-필리핀 FTA에서 철폐된 품목

한국 양허		양허 단계	필리핀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승용차(8%), 화물자동차(10%), 기타인 조섬유장섬유사(5%), 기타사진영화용 재표(1.625%) 등	11	즉 철폐	344	승용차(디젤)(5%), 승용차(가솔 린)(5%), 승용차(기타)(5%), 10인이 상 승합차(가솔린)(5%), 자동차부품 (5/3%), 화물차(가솔린)(5%), 화물 차(디젤)(5%) 등
직물제의류(5%), 폴리에스터사(5%), 모사(5%), 당류(5%), 수산화나트륨 (5%) 등	27	3년 철폐	-	-
바나나(30%), 자동차부품(8%), 화물 자동차(10%), 기타승용차(8%), 면류 (5%), 잼·과실젤리(5%),암(5%) 등	33	5년 철폐	232	가솔린 하이브리드(5%), 디젤 하이 브리드(5%), 10인이상 화물자동차 (5%), 자동차부품(30/20/15/10%), 화물차(기타, CKD)(5%), 전기자동 차(5%) 등
바나나(플랜틴)(30%), 통신선(0/5%), 기타채소(5%) 등	3	10년 철폐	-	-
제재목(5%), 고밀도화 목재(5%), 과일 주스(5%), 기타당류(5%), 밤(24%), 굴 (5%) 등	11	15년 철폐	245	냉동어류(5%), 공기조절기(5%), 수 산화나트륨(5%), 기타플라스틱제품 (5%), 인삼류(5%), 기타주철(5%), 면류(5%), 고등어(냉동)(5%), 섬유 기계(5%), 나선용 스프링(5%), 고 추(5%) 등
계(11.2%), 오징어(냉동, 5%), 타일 (5/0%), 볼베어링(5%) 등	15	관세 감축	44	기타플라스틱제품(12%), 자기제 식 탁용품 및 주방용품(12%), 기타문 구(15%), 스프링(15%), 차량용의자 (30/15%), 기타조명기기(20%), 양 탄자(15%) 등
	100	총 합계	865	

분야별 세부 상품양허

1. 공산품 (임산물 포함)

- 우리는 한-필리핀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철폐*되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483개(전체 수입액의 1.6%) 공산품 중 328개(수입액 1.2%)에 대해 추가 시장 개방 (모두 15년 내 관세철폐)
 - * 한-아세안 FTA에서 공산품 대다수(품목수 95.1% 수입액 98.4%)에 대해 이미 관세철폐 완료(2010년)
-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철폐되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1,648개(17.8%) 공산품 중 1,446개(15.6%)에 대해 추가 시장 개방 (15년 내 관세 철폐)
 - *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전체 공산품·임산물(9,264개) 중 품목수 기준 82.2%(7,616개), 수입액 기준 85.2%(54억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왔음
- 한-필리핀 FTA에서 품목수 기준 97.8%(9,062개), 수입액 기준 97.7%(62억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우리의 對필리핀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관세 철폐로 우리 기업의 對필리핀 수출 경쟁력 강화
 - (자동차) 특히 對필리핀 수출이 많은 일부 화물차 및 승용차(관세율 5%)에 대해 즉시 철폐, 준중형 승용차 및 전기차·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5%)에 대해 5년 내 관세 철폐하여 주요 자동차 수출 경쟁력 확보
 - (기타) 주요 자동차 부품(3~30%)에 대해 최대 5년 관세 철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15년 관세 철폐 등 중소기업 생산 품목의 수출 확대 기반 마련

< 한-필리핀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양허				필리핀 양허			
	품목수(개)		'17-'18년 對필리핀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한-아세안 FTA	9,436	95.1%	3,3032,566,337	98.4%	7,616	82.2%	5,435,034,477	85.2%
즉시 철폐	166	1.7%	6,752,183	0.2%	507	5.5%	507,335,018	8.0%
3년 철폐	37	0.4%	15,888,126	0.5%	160	1.7%	9,098,923	0.1%
5년 철폐	45	0.5%	14,268,031	0.5%	258	2.8%	85,681,555	1.3%
(5년 이내)	248	2.5%	36,908,339	1.2%	925	10.0%	602,115,495	9.4%
7년 철폐	-	-	-	-	-	-	-	-
10년 철폐	47	0.5%	362,661	0.0%	2	0.0%	1,250	0.0%
(10년 이내)	295	3.0%	37,271,000	1.2%	927	10.0%	602,116,746	9.4%
15년 철폐	33	0.3%	436	0.0%	519	5.6%	196,925,597	3.1%
철폐 소계	328	3.3%	37,271,435	1.2%	1,446	15.6%	799,042,342	12.5%
최종 관세철폐율	9,764	98.4%	3,069,837,772	99.6%	9,062	97.8%	6,234,076,819	97.7%
관세 감축	11	0.1%	4,105	0.0%	43	0.5%	14,196,863	0.2%
양허 제외	144	1.5%	11,859,795	0.4%	153	1.7%	131,853,871	2.1%
합계	9,919	100%	3,081,701,672	100.0%	9,264	100%	6,380,127,553	100.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7 (필리핀) AHTN 2017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한-필리핀 FTA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

한국 양허		양허 단계	필리핀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바지 스커트, 남성아우터셔츠, 절연코드세트, 중유, 장갑, 코트 및 자켓, 신사복상의, 승용차(불꽃점화식 1,500cc 초과, 압축점화식 2,500cc 이하), 여성양복상의, 화물자동차, 자전거부품, 이륜차부품, 화운데이션, 선박용 부품, 선박용압축점화식엔진, 모터사이클, 잠옷, 자동차부품, 손수건 스카프, 양말, 기타정밀화학제품, 기타 이륜차, 면사, 사진영화용재료, 의약품, 윤활유 등	166	즉시 철폐	507	프로세스와 콘트롤러, 메모리반도체, 기타 집적회로반도체, 화물차(디젤), 화물차(가솔린), 승용차(디젤), 승용차(가솔린), 승용차(기타), 10인 이상 승합차(가솔린),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필름, 의약품, 폴리프로필렌, 폴리메탄아크릴산메틸, 자동차부품, 접착제, 기타석유화학제품, 베어링, 폴리아미드수지, 폴리스틸렌, 연결부품, 기타플라스틱제품, 철도차량부품 등
언더셔츠, 신사복 상의, 남성바지, 남성셔츠, 스웨터, 여성바지스커트, 판유리, 폴리에스터사, 소모사, 방모사, 질소비료, 수산화나트륨 등	37	3년 철폐	160	통신선, 표백, 순면사, 장갑, 폴리아미드수지, 두발용 제품, 기타면사, 건전지, 폴리에스터사, 고압 케이블, 비누, 건축용 목제품, 위생용기, 언더셔츠, 철도차량 부품, 기타 고무제품, 자전거, 합판, 타일, 기타 인조섬유장섬유사, 제재목 등
자동차부품, 화물자동차, 전기자동차, 기타 승용차, 승용차(압축점화식 2,500cc 초과, 압축점화식 2,500cc 이하) 등	45	5년 철폐	258	기타승용차(디젤 하이브리드, 가솔린 하이브리드), 10인 이상 승합차(디젤 하이브리드, 가솔린 하이브리드, 전기차), 자동차부품, 통신선, 화물차(기타, CKD), 합판, 섬유판 등
-	-	7년 철폐	-	-
세안용품, 두발용 제품, 저압케이블, 합판, 기타정밀화학원료, 통신선, 합판, 섬유판, 파티클보드, 제재목, 기타고무제품, 기타화학공업제품, 기타시멘트, 백시멘트, 시멘트크링커 등	47	10년 철폐	2	신사복 상의, 스웨터
제재목, 윤활유, 기타타일및도자기, 기타목재류, 합판, 파티클보드	33	15년 철폐	519	와이어하네스, 편직물, 기타 플라스틱제품, 의류부속품, 용융아연도강판, 기타 폴리에스터직물, 공기조절기, 수산화나트륨, 연결부품, 플라스틱갈개및벽피복, 접착제, 섬유기계, 기타문구, 에틸렌중합체필름, 무기류부품, 유아용냅킨, 철강재용기 등
베어링, 위생용기, 타일	11	관세 감축	43	기타플라스틱제품, 자기제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 기타문구, 스프링, 차량용의자, 기타조명기기, 양탄자 등
	339	총합계	1,489	

< 한-필리핀 FTA 주요 수출입 공산품(임산물 포함) 양허 비교 >

순 위	한국 양허 (對필리핀 주요 수입품)				필리핀 양허 (對필리핀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필리핀 양허
1	자동차부품	8	13,879	5년 철폐	화물차 (디젤, 5톤이하)	5	35,659	즉시 철폐
2	기타정밀화학제품 (라우릴 알코올)	3	8,210	양허 제외	동선 (횡단면 6mm 이상, 14mm 미만)	1	21,185	즉시 철폐
3	편직제의류 (언더셔츠)	5	6,337	3년 철폐	와이어하네스 (제어용케이블)	30	12,689	15년 철폐
4	직물제의류 (신사복상의)	5	4,030	3년 철폐	기타합성수지	10	9,855	즉시 철폐
5	편직제의류 (바지 스커트)	5	3,881	즉시 철폐	기타플라스틱제품	12	8,958	관세 감축
6	제트유 (제트 연료유)	3	2,482	양허 제외	동선 (횡단면 6mm 이상)	1	6,895	즉시 철폐
7	직물제의류 (남성바지)	5	2,294	3년 철폐	자동차 (가솔린 하이브리드, 준중형)	5	6,880	5년 철폐
8	직물제의류 (남성셔츠)	5	2,032	3년 철폐	자동차 (가솔린 하이브리드, 준중형)	5	6,880	5년 철폐
9	편직제의류 (남성아우터셔츠)	5	1,029	즉시 철폐	자동차 (가솔린 하이브리드, 준중형)	5	6,880	5년 철폐
10	합성수지 (고밀도에틸렌)	5	896	양허 제외	자동차 (가솔린 하이브리드, 중형)	5	6,880	5년 철폐
	(10대 수입소계)		45,070		(10대 수출소계)		122,765	
	공/임산물 수입합계 (일반품목 포함)		3,081,701		공/임산물 수출합계 (일반품목 포함)		6,380,127	

* 대상 : 한-아세안 FTA 미철폐 및 MFN 유관세 품목

* 수입 또는 수출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관세율 : 기준세율(2018년 MFN 세율 및 2016년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 중 낮은 것)을 의미

2. 농산물

- 필리핀은 한-필리핀 FTA에서 품목수 기준 82.1%(1,201개), 수입액 기준 91.2%(7천7백만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전체 농산물(1,462개) 중 품목수 기준 48.5%(709개), 수입액 기준 60.7%(5천1백만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왔음
 - 필리핀은 한-필리핀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33.7%p(492개), 수입액 30.4%p(2천6백만불)을 추가로 관세 철폐함
 -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커피조제품(관세율 1%), 대두(1%), 곡분류(3%) 등은 즉시철폐, 인삼류(5%), 고추(5%), 배(7%), 된장(7%), 소주(5%), 브랜디(5%) 등은 15년내 철폐하여 對필리핀 수출 경쟁력 확보
 - 기타농산가공품(차 추출물, 관세율 10%), 감귤(10%), 보리가루(10%) 등 6개 품목은 관세 감축, 옥수수 가루(16%), 과일주스(10%), 무알콜 맥주(10%) 등 255개 품목은 양허 제외
-
- 우리는 한-필리핀 FTA에서 품목수 기준 72.1%(1,175개), 수입액 기준 82.9%(4억3천만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
 - * 우리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전체 농산물(1,630개) 중 품목수 기준 66.3%(1,081개), 수입액 기준 22.1%(1억1천만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왔음

[식량작물]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은 한-아세안 FTA와 동일하게 양허제외로 보호

- 감자(신선·냉장, 관세율 243.2%), 녹두(486%), 팥(336.6%) 등 주요 식량 작물 양허 제외
- 냉동밤(24%), 렌즈콩(5%) 등은 15년 철폐로 장기철폐

[축산물·낙농품] 대부분 양허제외 또는 장기 철폐

- 쇠고기(조제, 관세율 57.6%, 냉동 40%, 신선·냉장 32%), 돼지고기(신선·냉장 삼겹살 22.5%, 냉동·기타 25%), 닭고기(냉장 18%, 냉동 25%), 생우유(28.8%), 탈지·전지분유(140.8%), 연유(71.2%), 치즈(28.8%~36%) 등 양허 제외

- 기타 식용설육(소·돼지 이외, 14.4%), 소시지(24%) 등 15년 철폐

【과실류】 망고(관세율 24%), 파인애플(신선·건조, 30%), 감(40%), 사과(36%), 딸기(신선·냉동, 5%), 감귤(144%), 배(45%), 오렌지(50%) 등 양허 제외

- 플랜틴(30%), 캐슈넛(5%) 등은 10년 철폐, 구아바(24%), 망고스틴(24%), 파파야(24%)는 15년 철폐

- 바나나(신선, 30%)는 5년 철폐하되, 수입 급증에 대비한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 확보

*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10년간 운영)

【채소·특작류】 고추(관세율 270%), 마늘(360%), 양파(135%) 등 양념 채소류 대부분 양허제외

- 스위트콘(5%)은 10년 철폐 또는 15년 철폐, 토란줄기(5%) 관세 감축 등 일부 비민감품목에 대해 장기철폐 또는 관세 감축

【가공식품】 국수(5%), 라이스페이퍼(5%) 등은 15년 철폐

- 과실 칵테일(36%), 과실잼(24%) 등 주요 수입 가공식품 양허 제외

< 한-필리핀 FTA 농산물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양허				필리핀 양허			
	품목수(개)		'17-'18년 對필리핀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한-아세안 FTA	1,081	66.3%	115,234,155	22.1%	709	48.5%	51,748,685	60.7%
즉시 철폐	3	0.2%	4,039,229	0.8%	92	6.3%	8,701,309	10.2%
3년 철폐	1	0.1%	16	0.0%	7	0.5%	2,274,087	2.7%
5년 철폐	7	0.4%	284,054,314	54.6%	1	0.1%	723	0.0%
(5년 이내)	11	0.7%	288,093,559	55.4%	100	6.8%	10,976,118	12.9%
7년 철폐	1	0.1%	15,444,440	3.0%	-	-	-	-
10년 철폐	30	1.8%	3,018,022	0.6%	30	2.1%	0	0.0%
(10년 이내)	42	2.6%	306,556,021	58.9%	130	8.9%	10,976,118	12.9%
15년 철폐	52	3.2%	9,457,220	1.8%	362	24.8%	14,978,373	17.6%
철폐 소계	94	5.8%	316,013,241	60.7%	492	33.7%	25,954,491	30.4%
최종 관세철폐율	1,175	72.1%	431,247,396	82.9%	1,201	82.1%	77,703,175	91.2%
관세 감축	45	2.8%	8,284,462	1.6%	6	0.4%	32,734	0.0%
양허 제외	410	25.2%	80,812,841	15.5%	255	17.4%	7,506,628	8.8%
합계	1,630	100%	520,344,698	100.0%	1,462	100%	85,242,537	100.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7 (필리핀) AHTN 2017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한-필리핀 FTA 농산물 양허유형별 주요품목 >

한국 양허		양허 단계	필리핀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원당(사탕수수당), 원당(사탕무당), 기타정밀 화학제품	3	즉시 철폐	92	사료, 커피조제품, 음료베이스, 기타식물성 물질, 된장, 인삼음료, 분유, 식물성액즙, 과일주스, 감자, 기타곡분, 고비, 고사리, 소, 초코렛, 대두, 보리가루, 쌀가루, 밀, 레몬, 대추야자, 잣, 강낭콩, 감자, 난초, 기타화초, 버터 등
기타당류(맥아당)	1	3년 철폐	7	된장, 감, 딸기, 사과, 감귤, 양송이, 커피 조제품
바나나, 향미용 조제품, 브랜드, 당면, 곡류 조제품, 양, 감귤류 잼	7	5년 철폐	1	변성전분(접착제)
파인애플(기타조제)	1	7년 철폐	-	-
사탕, 당류(사탕수수당), 아자유, 설탕과자, 과일주스, 브랜드, 위스키, 보드카, 포도종류 주, 기타주, 커피조제품, 스위트콘, 바나나 (플랜틴), 유아용조제식품 등	30	10년 철폐	30	밀가루, 고구마, 시금치, 톨립, 백합, 난류, 쇠고기, 기타산동물, 분유, 기타주류 등
기타과실, 맥주, 파인애플 주스, 사료, 파파야, 당류, 국수, 레몬주스, 과실과 견과류, 사료용 조제품, 구아바, 유채유, 꼬냑, 라임 주스, 팝콘, 스위트콘, 라이스 페이퍼, 쌀과자, 겨자유, 대두유, 청환죽, 감귤류껍질, 체리, 밤, 두리안, 망고스틴, 대추야자, 렌즈콩, 동부콩 등	52	15년 철폐	362	소주, 브랜드, 인삼류, 된장, 간장, 면류, 밀가루, 기타식물성유지, 치즈, 맥주, 대추, 매실, 고추, 발효유, 참기름, 마가린, 땅콩, 과일주스, 꿀, 곡류가공품, 녹차, 배, 우유, 닭고기, 호박, 참깨, 사료, 칠면조, 토마토, 빵, 오리고기, 식물성한약재 등
기타과실, 버찌, 위스키, 리큐르, 버터조제품, 칩뿌리, 닭시용사료, 보조사료, 두부, 훈장, 차, 크랜베리, 살구, 육즙, 대나무, 포도, 레몬, 토란, 강낭콩, 토란줄기, 유장, 거위 등	45	관세 감축	6	감귤, 돼지고기, 보리가루, 기타과실 등
	139	총합계	498	

< 한-필리핀 FTA 주요 수출입 농산물 양허 비교 >

순위	한국 양허 (對필리핀 주요 수입품)				필리핀 양허 (對필리핀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필리핀 양허
1	바나나(신선)	30	283,988	5년 철폐	소주	5	3,159	15년 철폐
2	파인애플 (신선, 건조)	30	58,033	양허 제외	커피조제품	1	2,023	즉시 철폐
3	파인애플 (기타방법조제)	36	15,444	7년 철폐	브랜드	5	1,964	15년 철폐
4	기타농산가공품 (과실 칵테일)	40	8,313	양허 제외	인삼류 (커피크리머)	5	1,964	15년 철폐
5	기타농산가공품 (과실견과기타)	36	8,265	감축	커피조제품	5	1,836	15년 철폐
6	망고 (신선, 건조)	24	8,181	양허 제외	옥수수 가루	16	1,504	양허 제외
7	기타농산가공품 (과실혼합물 기타)	36	3,559	양허 제외	정당(사탕수수당· 사탕무당 등)	1	1,260	양허 제외
8	원당 (기타 사탕수수당)	3	3,414	즉시 철폐	브랜드	5	1,029	15년 철폐
9	기타과실 (과실류의 분)	5	2,403	15년 철폐	된장	5/0	1,027	3년 철폐
10	맥주	15	2,394	15년 철폐	된장	7	1,027	15년 철폐
11	과실주스 (감귤류 주스)	5	1,928	양허 제외	커피조제품	5	768	15년 철폐
12	과실주스 (파인애플 주스)	5	1,363	15년 철폐	커피조제품	5/0	619	3년 철폐
13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	24	1,135	15년 철폐	기타당류 (포도당, 포도당시럽)	3	613	양허 제외
14	설탕과자(캔디류)	8	1,052	10년 철폐	감	10/0	596	3년 철폐
15	사료용 조제품	40.4	1,027	15년 철폐	정당 (65% 이상 설탕 함유)	50	587	양허 제외
16	멜론(파파야)	24	754	15년 철폐	기타식물성물질	3	537	즉시 철폐
17	사탕무당	3	624	즉시 철폐	기타농산가공품 (단백질 농축물)	3/0	480	양허 제외
18	사탕수수당(당도 98.5 초과)	3	447	10년 철폐	간장	5	345	15년 철폐
19	야자유	3	428	10년 철폐	정당(사탕수수당· 사탕무당 등)	1	276	양허 제외
20	설탕과자(캔디류 이외 기타)	8	405	10년 철폐	정당(사탕수수당· 사탕무당 등)	65	276	양허 제외
	(20대 수입소계)		403,157		(20대 수출소계)		21,899	
	농산물 수입합계		520,344		농산물 수출합계		85,242	

* 대상 : 한-아세안 FTA 미철폐 및 MFN 유관세 품목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7 (필리핀) AHTN 2017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관세율 : 기준세율(2018년 MFN 세율 및 2016년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 중 낮은 것)을 의미

3. 수산물

- 필리핀은 한-필리핀 FTA에서 품목수 기준 77.9%(371개), 수입액 기준 76.1%(1천4백만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필리핀은 한-필리핀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27.7%p(132개), 수입액 기준 60.6%p(1천1백만불)을 추가로 관세철폐
 - * 필리핀은 한-아세안 FTA를 통해 전체 수산물(476개) 중 품목수 기준 50.2%(239개), 수입액 기준 15.5%(2백9십만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왔음
 - 우리의 수출 관심품목인 김(관세율 10%) 즉시 철폐 또는 15년 철폐, 가다랑어(냉동, 5%), 황다랑어(냉동, 5%) 15년 철폐 등 우리 주요 수산물의 對필리핀 수출 경쟁력 확보
- 우리는 한-필리핀 FTA에서 품목수 기준 73.4%(501개), 수입액 기준 52.8%(1천8백만불)에 대하여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함
 - 우리는 한-필리핀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수 기준 3.5%p(24개), 수입액 기준 10.5%p(3백5십만불)을 추가로 관세철폐
 - * 우리는 한-아세안 FTA를 통해 전체 수산물(683개) 중 품목수 기준 69.8%(477개), 수입액 기준 42.3%(1천4백만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해왔음
 - 우리 주요 생산 어종 또는 對필리핀 수입액이 높은 전복(조제 또는 저장, 관세율 5%), 새우(냉동, 20%), 문어(조제 또는 저장, 5%), 새끼 뱀장어(5%) 등 92개 품목(전체 수입액의 45.9%)은 양허 제외

< 한-필리핀 FTA 수산물 양허 수준 비교 >

구분	한국 양허				필리핀 양허			
	품목수(개)		'17-'18년 對필리핀수입액 평균(불)		품목수(개)		'17-'18년 對한국수입액 평균(불)	
한-아세안 FTA	477	69.8%	14,293,135	42.3%	239	50.2%	2,988,929	15.5%
즉시 철폐	1	0.1%	3,335,329	9.9%	35	7.4%	533,742	2.8%
3년 철폐	-	-	-	-	-	-	-	-
5년 철폐	-	-	-	-	-	-	-	-
(5년 이내)	1	0.1%	3,335,329	9.9%	35	7.4%	533,742	2.8%
7년 철폐	-	-	-	-	-	-	-	-
10년 철폐	3	0.4%	0	0%	15	3.2%	0	0.0%
(10년 이내)	4	0.6%	3,335,329	9.9%	50	10.5%	533,742	2.8%
15년 철폐	20	2.9%	228,132	0.7%	82	17.2%	11,187,229	57.9%
철폐 소계	24	3.5%	3,563,461	10.5%	132	27.7%	11,720,971	60.6%
최종 관세철폐율	501	73.4%	17,856,595	52.8%	371	77.9%	14,709,900	76.1%
관세 감축	90	13.2%	434,165	1.3%	19	4.0%	49,296	0.3%
양허 제외	92	13.5%	15,516,659	45.9%	86	18.1%	4,578,954	23.7%
합계	683	100%	33,807,418	100.0%	476	100%	19,338,150	100.0%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7 (필리핀) AHTN 2017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한-필리핀 FTA 수산물 양허유형별 주요 품목 >

한국 양허		양허 단계	필리핀 양허	
주요 품목	품목 수		품목 수	주요 품목
실장어(활어)	1	즉시 철폐	35	김, 대구(냉동), 기타어류(냉동), 기타 수산물통조림(갑오징어), 기타조개, 염장수산물, 참치, 뱀장어, 활어 등
-	-	5년 철폐	-	-
-	-	7년 철폐	-	-
피조개(신선 또는 냉장), 농어(양식용), 돔(양식용)	3	10년 철폐	15	피조개, 기타수산가공품, 대구, 참치, 넙치, 가자미 등
정어리(조제), 굴(조제 또는 저장처리), 황다랑어(신선냉장), 성게(냉동), 피조개(냉동), 톨라피아(활어), 기타어류(염수장), 전복(냉동), 꽃게(신선), 오징어(신선 또는 냉장), 다랑어기타/신선,냉장) 등	20	15년 철폐	82	가다랑어(냉동), 황다랑어(냉동), 김, 대구(냉동), 고등어(냉동), 오징어(냉동), 뱀장어(어류통조림), 상어 지느러미(조제), 멸치(조제), 정어리, 해파리, 넙치(냉동), 가자미(냉동) 등
갑오징어(냉동), 어류조제품, 갑각류(냉동), 다시마, 김, 해파리(조제), 성게(조제), 소라(조제), 달팽이(조제), 새조개(조제), 바지락(조제), 가리비과의 조개(조제), 해초류와 기타조류, 톳(건조, 기타), 다시마(기타, 염장한 것) 등	90	관세 감축	19	대구(냉동), 명태(냉동), 갈치(냉동), 기타어류(냉동), 기타조개 등
	114	총 합계	151	

< 한-필리핀 FTA 주요 수출입 수산물 양허 비교 >

순 위	한국 양허 (對필리핀 주요 수입품)				필리핀 양허 (對필리핀 주요 수출품)			
	품목명 (HS 10단위)	관세율 (%)	수입(천불)	우리 양허	품목명 (HS 8단위)	관세율 (%)	수출(천불)	필리핀 양허
1	전복 (조제 또는 저장)	5	7,866	양허 제외	가다랑어 (냉동)	5	4,714	15년 철폐
2	새우(냉동)	20	3,668	양허 제외	기타수산가공품 (고등어, 냉동)	5	4,097	15년 철폐
3	문어 (조제 또는 저장)	5	1,987	양허 제외	기타수산가공품 (참치, 냉동)	5/0	4,097	양허 제외
4	새끼뱀장어	5	1,291	양허 제외	황다랑어 (냉동)	5	1,567	15년 철폐
5	기타(활어)	8/5	263	양허 제외	고등어(냉동)	5	259	15년 철폐
6	갑오징어(냉동)	5	158	관세 감축	고등어(냉동)	5	259	15년 철폐
7	어류조제품(연어, 청어 외)	5	127	관세 감축	김(꼬시래기속)	10	125	15년 철폐
8	기타조개(냉동)	5	86	관세 감축	기타수산가공품 (냉동)	10/5/0	90	양허 제외
9	새우살(냉동)	20	74	양허 제외	김	10/0	88	양허 제외
10	정어리 통조림	16	65	15년 철폐	기타해조류	10/0	88	양허 제외
11	게(냉동)	11.2	61	관세 감축	김(우뭇가사리)	10/0	68	즉시 철폐
12	갈치 (신선 또는 냉장)	20	59	양허 제외	김(모자반)	10	68	15년 철폐
13	갈치(냉동)	10	53	양허 제외	새우	15/0	32	양허 제외
14	굴 (조제 또는 저장)	5	51	15년 철폐	대구(냉동)	5	31	15년 철폐
15	참치(신선, 냉장)	5	43	15년 철폐	기타어류(냉동)	0/5/10	27	즉시 철폐
16	오징어 (냉동)	5	40	양허 제외	대구(냉동)	10	27	양허 제외
17	성게(냉동)	5	38	15년 철폐	대구	10/5/0	27	즉시 철폐
18	틸라피아(냉동)	10	37	양허 제외	어류통조림	15	23	15년 철폐
19	참치(기름 담금)	20	30	양허 제외	미역	10/0	18	양허 제외
20	갑오징어(냉동)	10	27	양허 제외	기타수산가공물	0/5	17	양허 제외
	(20대 수입소계)		16,024		(20대 수출소계)		15,722	
	수산물 수입합계		33,807		수산물 수출합계		16,349	

* 대상 : 한-아세안 FTA 미철폐 및 MFN 유관세 품목

* 품목수 기준 : (한국) HSK 2017 (필리핀) AHTN 2017 / 수입액 기준 : 양측 모두 '17-'18년 평균

* 관세율 : 기준세율을 의미

3

무역구제

개요

- FTA에 따른 관세 인하 또는 철폐로 인해 수입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양자 세이프가드 도입
- 무역구제 조치 발동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WTO협정문 대비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합의

상세내용

1.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절)

[양자 세이프가드]

-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FTA 특혜관세 적용의 결과로, 동종 및 직접경쟁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정지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수준까지 관세인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
- 협정 발효로부터 관세인하 또는 철폐종료 후 최대 3년까지 발동 가능(발동기간은 2년 이하, 필요 시 1년 연장 가능)하며 과도기간* 만료 후 조치 적용 금지
 - * 과도기간: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부터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당사국 관세 양허표에 따른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 후 3년까지의 기간
- 필요한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된 지 2년 후에 기 조치 상품에 대해 1회를 초과하여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가능

-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 자유화 실시
-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조기에 조치를 할 수 있는 '잠정적 긴급수입제한조치' 허용
 - 잠정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비판정 이전에 최소 20일간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고 조사 개시로부터 45일 이후 조치 발동 규정
 - 잠정조치를 적용하기 전 상대국에 통보하고 조치 적용 후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 개시, 잠정조치의 존속 기간은 최대 200일로서 전체 조치 기간에 포함
-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 후 3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은 상대국에게 보상 관련 협의 기회 제공
 - 협의 후 30일 내 보상 관련 합의 도출 실패 시, 조치를 적용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해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 효과를 가지는 양허 적용 정지 가능

(다자 세이프가드)

-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시,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그 자체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거나,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 상대국의 수출품을 발동 대상에서 재량적으로 면제 가능
- WTO 협정에 따른 다자 세이프가드 발동 권한을 보유하되, 동일한 상품에 대해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다자 세이프가드의 동시 발동은 금지

2. 반덤핑 및 상계조치 (제2절)

□ 덤핑마진 산정 시 '제로잉 금지*' 관행 준수

* 제로잉(Zeroing) 금지: 반덤핑마진 계산 시 양 또는 음의 값에 상관없이 모든 개별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음의 마진을 임의로 누락하여 총 덤핑마진이 높게 계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

□ 덤핑마진이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높을 경우,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부과원칙('lesser-duty' rule) 규정 도입*

* WTO 반덤핑 협정상 '최소부과원칙'은 바람직한 것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적용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WTO 반덤핑협정 제9.1조)

□ 반덤핑 신청 접수시 조사를 개시하기 15일 전에 신청 접수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 기회 제공*

○ 상계관세 신청 접수시 조사 개시 전 신청 접수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협의 기회 제공

* WTO 반덤핑 협정은 조사개시 전 통보의무만 규정(WTO 반덤핑 협정 제5.5조)

□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 이후 긍정적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자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undertakings)* 제안에 관한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당사국 수출자에게 부여

* 약속(Undertakings): 수출자의 자발적인 가격 인상에 관한 약속 제의가 조사당국에 의해 수락될 경우,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중지 또는 종결할 수 있는 제도

□ 재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 신청을 '특별한 주의'를 갖고 검토하도록 노력하며, 이러한 검토로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음

- 양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 조치와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한 무역구제 사안을 다루기 위해 무역구제위원회를 설치
 - 최소 연 1회 회합하며 합의할 수 있는 대로 더 자주 회합 가능
- 무역구제위원회의 기능은 양국간 무역구제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지식 및 이해 증진, 제3장(무역구제)의 이행 감독, 양 당사국의 무역구제 담당기관간 협력 증진 등을 포함

4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개요

- (원산지 규정)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일반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규정
 - 원산지 기준으로 (i)완전생산기준, (ii)실질변형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s), (iii)원산지 재료 생산기준을 적용
 - 세번변경기준 미충족시에도 비원산지재료 가치가 상품 본선인도가격(FOB)의 10% 이하인 경우 원산지를 인정하는 미소기준, 최종 제품에 투입된 다른 당사자의 원산지 재료의 누적을 허용하는 등 보충규정 도입
 -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에는 총 5,387개 세번(HS2017, 6단위)별로 비원산지 재료 사용시에도 원산지로 간주할 수 있는 요건 규정
- (원산지 운영 절차)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방식, 특혜관세대우 신청 절차 및 원산지 검증방식 등에 대하여 규정
 - (원산지 증명) 기관증명 및 자율증명 방식을 채택하고 자율증명은 순차적으로 도입(발효 후 인증수출자 즉시, 수출자·생산자 10년 내 이행)
 - (특혜관세대우 신청)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 신청 시 원산지 증명서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함
 - (원산지 검증) 관세당국이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및 수출국에 정보를 서면 요청할 수 있고, 수출국 방문검증이 가능하도록 규정

상세내용

1. 원산지 기준 (제4.2조)

-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원산지 상품으로 다음을 규정
 - 당사자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당사자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였으나, 품목별 원산지 기준(부속서 4나)을 충족하는 상품
 -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원산지 재료로만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

2.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4.3조)

- 당사자에서 전적으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을 규정
 - 당사자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성 상품
 - 당사자에서 출생·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및 이로부터 획득된 상품
 - 당사자에서 수렵, 밧사냥, 어로, 양식 등으로 획득된 상품
 - 당사자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채취된 가호에서 라호까지 포함되지 않은 광물 및 그 밖의 천연자원
 - 당사자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자에 등록되고 그 당사자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이 추출·채취한 어획물 및 그 밖의 해산물, 그리고 당사자나 그 당사자의 인이 추출·채취한 그 밖의 생산물
- 다만 당사자나 그 당사자의 인은 그러한 수역, 해저 및 해저 하부를 개발할 권리를 국제법에 따라 가져야 함

- 당사자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추출·채취한 어획물 및 그 밖의 해산물
- 당사자에서의 생산 또는 소비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또는 부스러기 그리고 당사자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의 회수 목적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함

3.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제4.4조)

- 제4.2조 나호*의 목적상, 부속서 4-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을 제외하고 일반 규칙으로서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Regional Value Content))이 본선인도가격(FOB) 가치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4단위 수준(세번의 호 변경)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짐

* 당사자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하였으나, 품목별 원산지 기준(부속서 4-나)을 충족하는 상품

-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의 계산 방식으로 직접법/집적법(Build-up)과 간접법/공제법(Build-down) 규정

- 직접법/집적법(Build-up) : 원산지 재료가치 등을 누적하여 계산

$$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 간접법/공제법(Build-down) : 비원산지 재료가치를 제외하여 계산

$$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4. 최소허용수준(미소마진) (제4.5조)

-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의 10% 이하일 경우, 해당 상품(제50류-63류 제외)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 섬유 및 의류(제50류-제63류)는 미소기준을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중량의 10% 이하인 경우로 규정

5. 최소 공정 (제4.6조)

- 비원산지 재료를 가공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공정 (불인정 공정)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역내산으로 불인정
 - 상품의 운송 및 보관을 위한 보존 공정, 포장의 변경 및 해체, 방직용 섬유의 다림질, 제품의 단순 혼합, 동물의 도살 등

6. 누적 (제4.7조)

- 한쪽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이 다른 당사자에서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상품의 재료로 사용될 경우, 그 최종 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7. 특정 상품의 취급 (제4.8조)

- 부속서 4-다에 따라 설립되는 역외가공위원회를 통해 향후 개성공단 제품에 한-캄보디아 FTA상 특혜관세 수혜 인정 기회 마련

8. 생산에 사용된 재료(중간재) (제4.9조)

- 비원산지 재료를 투입한 중간재가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여 최종재 생산에 사용될 때 중간재 전체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9. 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제4.10조)

- 상품 운송용 포장재 및 용기는 원산지 판정 시 고려되지 아니함
- 상품이 RVC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재 및 포장재료가 그 상품과 일체를 이루는 경우, 그 가치를 원산지 결정시 고려

10. 세트 (제4.11조)

- 세트는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11.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제4.12조)

- 상품과 함께 제시된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등은 그 상품의 세번 변경 기준의 충족 여부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아니함
 - 다만,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RVC) 요건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부속품 등의 가치는 역내가치포함비율(RVC) 계산에 포함

12. 중립재 (제4.13조)

-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중립재*의 원산지는 결정될 필요가 없음

* 연료, 에너지, 촉매제, 안전장비, 시험 및 검사 장비, 설비 유지를 위한 예비부품 등

13.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제4.14조)

- 상품이 혼합되거나 물리적으로 결합된 원산지 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경우, 그러한 재료의 원산지는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재고관리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의하여 결정

14. 직접 운송 (제4.15조)

- 특혜관세 대우는 수출 당사자에서 수입 당사자로 직접 운송되는 원산지 상품에만 적용
 - 다만, 수출국과 수입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제3국을 경유 하더라도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
 -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경유국에서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의 보존을 위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15. 품목별원산지기준(PSR) (부속서 3-가)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원산지 기준은 큰 틀에서 우리 기체결 FTA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생산공정 반영, 역내 공급망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일부 완화된 기준을 도입하여 업계의 활용도 제고
 - (석유·화학) 대부분 “세번변경기준(CTH)과 부가가치 40%” 선택기준
 - (섬유·의류)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대부분 “세번변경기준

(CC/CTH)"으로 규정하고, 한-아세안 FTA 등 우리 기체결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류의 추가 공정기준(재단 및 봉제) 삭제

- (철강) 대부분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한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기준
 - (자동차) 완성차는 대부분 "부가가치 45%" 기준이고, 부품은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으로 기체결 FTA 수준과 비슷
 - (기계, 전기·전자) 대부분 "4단위 세번변경(CTH) 또는 부가가치 40%"
 - (농축수산물) 신선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 또는 "2단위 세번변경(CC)"으로 엄격한 기준을 유지
 - 가공식품류는 대부분 한-아세안 FTA 수준을 유지하되, 우리 수출 유망품목인 고추장, 조제분유, 빵 등은 주요 재료의 역외산 사용을 허용*하여 한-아세안 FTA 대비 기준 완화
- * (예:고추장) 한-아세안 FTA의 "역외산 채소류(07류)·향신료(09류) 사용 불가" 조건 삭제
(예:조제분유) 한-아세안 FTA의 "역외산 낙농품(0401-0404호)·곡물(10류)·전분(11류) 사용 불가" 조건 삭제

16. 원산지 증명 (부속서 4-가 규칙 제2조, 제7조, 제9조)

- 원산지 증명은 기관증명 및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 자율발급은 순차적으로(10년 내) 도입
 - (기관증명) 발급기관은 수출자(인증수출자 포함)·생산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부록 4-가-1)를 발급
 - (자율증명) 수출자·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부록 4-가-2)로 원산지 증명, 인증수출자는 원산지 신고서(부록 4-가-2)와 상업송장 등에 작성되는 방식 채택

17.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제4조)

- 양 당사국은 원산지 규정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개발 노력 규정

18. 인증수출자 (제8조)

- 수출국 관세 당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후 지위를 부여

19. 특혜관세대우 신청 절차 (제11조, 제12조)

- 수입자가 세관 신고시 원산지 증명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음
 - 수입자는 수입시점 이후에도 수입일 후 1년 내에 또는 수입 당시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음

20.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제13조)

- 미화 200불을 초과하지 않는 상품(우편으로 송부된 상품 포함)은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면제

21. 원산지 검증 (제15조)

- 수입 당사자의 관세 당국은 아래 검증 절차를 수행
 -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의 추가 정보 서면 요청

-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위한 정보 서면 요청
-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검증

22. 기록 유지 요건 (제16조)

- 수출자, 생산자 또는 관세 당국은 상품의 원산지 증명에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 발급일부터 3년 이상 유지

5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개요

-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분야는 상품 수출입 과정에 수반되는 통관의 절차적 내용과 관세협력 관련 내용을 규정
 - 일관성 및 투명성, 사전심사, 상품의 반출, 특송화물, 재심사 및 불복 청구, 관세협력 및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

상세내용

1. 일관성 및 투명성 (제5.4조, 제5.5조)

- 관세법과 규정이 관세영역에 일관되게 이행·적용되도록 보장
- 이해관계인 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인터넷에 신속하게 관세법과 관련 절차를 공표

2. 사전심사 (제5.10조)

- 수입자, 수출자 등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분류·원산지 충족 여부·관세평가 등을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제도
 -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된 경우, 90일 내에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

3. 상품의 반출 (제5.11조)

-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하여 간소화된 통관 절차 채택 및 유지

- 수입상품에 부과할 관세 등이 최종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요건 충족 시 반출을 허용
- 부패성 상품의 피할 수 있는 손실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해 일정 요건하에 부패성 상품의 반출을 허용

4. 공인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 (제5.13조)

-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공인업체, Authorized Operator)는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는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

5. 위험관리 및 특송화물 (제5.14조, 제5.15조)

- 통관 통제 등을 고위험 탁송품에 집중하고, 저위험 탁송물은 신속하게 반출
-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특송화물의 신속한 통관 절차 채택 및 유지

6. 재심사 및 불복청구 (제5.18조)

- 관세당국의 행정결정에 대하여 행정적 불복청구·재심사와 사법적 불복청구·재심사를 보장

7. 관세협력 및 위원회 설치(제5.19조, 제5.21조)

- 양국 관세행정기관은 통관절차의 간소화 등을 위해 서로 지원하고 관세 행정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
-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를 설립 및 운영하여 원산지 규정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운영 등을 도모

6

경쟁

개요

- 경쟁 촉진,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하여 ①경쟁 관련 법·규정의 기본원칙, ②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치 및 협력, ③정보교환 및 비밀 유지 등을 규정

경쟁 주요 내용

1. 목적 및 기본원칙 (제6.2조 및 제6.3조)

- 경제적 효율성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목적으로 하되, 각국이 경쟁 관련 법·규정 및 정책을 독자적으로 규율할 주권적 권리를 인정
 - 아울러 경쟁 관련 법·규정 및 정책에 대해 당사자들간 발전단계 및 역량의 중대한 차이를 인정

2.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조치 (제6.4조)

- 반경쟁적 행위를 막기 위한 경쟁 관련 법·규정을 도입·유지하고, 법·규정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 독립성이 보장된 권한당국을 유지
 - 경쟁 관련 법·규정은 국적에 기초한 차별 없이,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주체에 대하여 적용 및 집행
 - 경쟁 관련 법·규정 적용을 면제하는 경우, 투명하고 및 공익에 근거해야 하며, 경쟁 관련 법·규정 등은 모두 공개 필요

- 경쟁 관련 법·규정에 따라 제재 등을 부과하는 최종결정의 근거, 최종결정에 대한 불복청구를 공개하고, 피심인이 이용가능하도록 함
 -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제재의 이유를 가능한 서면으로 제공하고, 의견진술권 및 증거 제출권 부여
 - 경쟁 관련 법·규정에 따른 제재에 대해 피심인의 불복청구를 보장

3. 협력 (제6.5조)

- 당사자들은 각국의 권한당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권한당국을 통하여 경쟁법 집행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 가능
 - 각 당사자의 경쟁법 집행 활동이 다른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 신속히 통보
 - 각 당사자의 경쟁법 집행 활동이 다른 당사자의 중요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고, 해당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
 - 요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 정보 교환 및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집행 행위를 조정

4. 정보의 비밀 유지 (제6.6조)

- 각 당사국의 법·규정 및 중요한 이익에 반하는 정보에 대해 공유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
 - 당사국이 비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의 목적, 요청한 정보의 사용목적을 피요청 당사국에게 통보
 - 비밀정보의 공유 및 활용은 당사자간 합의된 조건에 기초해야 함
- 비밀 유지를 조건으로 정보가 공유된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일정한 의무를 준수

- 정보의 비밀 유지 및 요청 시의 목적으로만 정보를 사용
- 정보를 법원 등에서의 형사절차 증거로 사용 금지
- 정보 제공 당사자가 승인하지 않은 기관 등에 대해 정보 공개 금지, 정보 제공 당사자의 요구 조건을 준수

5.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제6.7조)

- 각 당사자는 비밀이 아닌 정보의 공유, 경쟁당국 공무원의 교류 등 기술 협력이 당사자들의 공동된 관심사임을 인정

6. 분쟁해결 절차 비적용 (제6.8조)

- 경쟁채터에는 제9장 분쟁해결 절차 적용을 배제

7. 협의 (제6.9조)

- 특정 문제 해결이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의를 개시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다른 당사자에 의해 제기된 사항을 호의적으로 충분히 고려

8. 소비자 보호 (제6.10조)

- 당사자들은 소비자보호법, 소비자 보호 관련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
 - 각 당사자는 무역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규정을 도입하거나 유지
 -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정
 - 소비자 보호 관련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당사자간 협력이 가능

9. 공기업 (제6.11조)

- 공기업 및 특별* 또는 배타적 권리를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기업도 경쟁법의 적용대상임을 규정
 - 단, 경쟁법 적용이 공기업 등의 임무 수행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경쟁법 적용 배제 가능

< 특별한 권리 >

- ▶ 당사국이 객관적·비례적·비차별적인 기준에 의하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허가 받은 기업의 수를 둘 이상으로 지정·제한하거나 (하나인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 또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여타 기업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우위를 주는 경우를 의미

※ 경쟁채터에서 특별 또는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은 기업을 해소하거나 공기업을 민영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님

7

경제 및 기술협력

개요

- 경제협력의 기본원칙(제1조)을 규정하고, 협력의 범위(제2조), 형태(제3조) 및 자원(제4조)을 세부 조항에 상세 명시하는 한편,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제5조)를 설치하여 양국의 협력 기반을 조성
 - 부속서에서는 국제적 공중 보건 비상사태와 팬데믹 협력, 백신 협력, 기후변화 협력에 대한 내용을 규정

상세내용

1. 협력 범위 (제7.2조)

- 보건·생명과학 제조 및 기술 금속 가공 협력을 포함한 산업개발, 혁신 및 연구·개발, 소상공인·중소기업, 영화협력을 포함한 창의·문화 산업, 지적재산, 표준·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전자상거래 등

2. 협력 형태 (제7.3조)

- 정보 교환, 우수 관행 공유, 인적자원 훈련, 전문가 교류, 무역 및 투자 증진, 비즈니스 포럼, 기술 지원, 공동 연구 및 개발, 기술 및 새로운 사업 모델 이전 등

3. 자원 (제7.4조)

- 경제 및 기술 협력의 이행을 위해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에 노력하며, 상호합의에 따라 적절히 이행비용 부담

4. 경제 및 기술 협력위원회 (제7.5조)

- 양국 고위 공무원이 공동의장을 맡는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를 설치하여, 협력분야 개발 및 계획 수립, 점검, 평가 기능 수행하며 연1회 회합

5. 부속서

- 공중보건위기상황과 팬데믹 협력
 - 양국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의 사회경제적 영향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과 및 필수적 인력 이동을 보장
 -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우수 관행 공유하고, 국제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할 때 관련 정보 공개
- 백신 협력
 - 양국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포함한 국제기관과 함께 백신 생산 및 관련 공급, 제조 혁신 확대에 협력
 - 세계적으로 백신 부족시 백신 생산과 글로벌 공급을 위한 양국 및 기업 간 협력 증진
 - 양국은 임상시험, 백신 승인 과정 및 정보를 교환하며, 백신 및 백신 생산용 원재료에 대한 신속한 통관 절차 채택

□ 기후변화 협력

- 각국의 국가결정기여의 이행에 따라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하는 역량을 향상하는 협력 개발 및 강화
- 국가결정기여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적응·완화 프로그램을 증진하고, 파리협정 6조에 따른 기후완화 투자 지원 및 국제적으로 이완된 완화성과를 사용하는 수단을 찾는 데 합의
- 양국은 기후행동에 대한 우수관행과 기술 노하우 교환

8

투명성

정의 [제8.1조]

-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모든 인(人)과 사실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판정 또는 해석을 의미

공표 [제8.2조]

-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관한 자국법·규정·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신속히 공표
- 가능한 한도에서 자국법과 규정에 따라 제안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고 이해관계인과 상대국에게 의견제시 기회 보장

정보의 제공 [제8.3조]

- 다른 쪽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해당되는 조치(조치안 포함)와 관련된 정보를 가능하고 실행할 수 있는 한도에서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

행정절차 [제8.4조]

- 행정절차가 개시된 때에 가능한 경우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대국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성격 및 법적근거, 쟁점사항에 대해 통지 하고, 최종 행정처분 이전에 의견개진 기회 제공

재심사 및 불복청구 (제8.5조)

- 협정이 적용되는 사안과 관련된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사 또는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유지
- 재심사·불복 절차에서 당사자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방어할 수 있는 기회와 행정당국에 의하여 취합된 기록에 기초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보장

9

분쟁해결

개요

- 분쟁해결절차는 “①당사국간 협의 → ②패널 설치 → ③패널보고서 제출 → ④패널보고서 이행 → ⑤보상 및 혜택의 정지”의 순서로 진행
-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 협의, 중재패널, 이행, 보상 및 보복 등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인 시한을 규정하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유도
 - ※ ‘부패성 상품’ 등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단축 시한 적용
 - 패널 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패널보고서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양허·기타의무 정지 절차를 규정
- 절차의 세부 규칙 및 중재패널 구성원의 의무 사항 등은 부속서 [절차규칙(부속서A), 행동규범(부속서B)]에 별도로 상세 규정

상세 내용

범위 (제9.3조)

- 분쟁해결 챕터는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과 관련하여, “①협정상 의무와의 불합치 조치, ②협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적용
 - ※ 제6장(경제협력), 제5장(무역구제)의 제2절(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2.15조(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7.6조(투명성 제고 및 부패 방지)에

대한 협력), 부속서 3-나(특정 상품의 취급)는 동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 미적용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제9.4조)

- 분쟁이 ①이 협정, ②WTO협정, ③양국이 당사자인 다른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국은 분쟁해결 포럼 선택 가능
 - 분쟁해결 절차 가운데 하나를 선택 시, 다른 절차의 이용 제한

협의를 (제9.5조)

- 서면으로 된 협의요청에 대해 피소 당사국은 10일 내에 응답하고, 30일(부패성 상품 등 긴급사안은 15일)내에 피소 당사국 영역에서 협의 개시

주선, 조정 또는 중개 (제9.6조)

- 분쟁해결의 대안적 수단으로 양국은 주선, 조정, 중개를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 및 양국의 입장은 비공개로 유지

중재패널 (제9.7조~제9.13조)

-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긴급사안 15일)내에 협의를 개시되지 않거나, 60일(긴급사안 30일) 내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제소국은 서면으로 패널설치 요청 가능(제9.7조)
 - 중재패널은 3인으로 구성되며 설치일은 세 번째 중재인 임명일(제9.9조)

- 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하며 중재패널의 심의 및 중재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로 취급(제9.10조)

※ 중재패널 절차의 기본적 사항은 제9.1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보다 상세한 절차 규칙은 부속서 9-가(중재절차 규칙)에 규정(제9.16조)

패널 구성(제9.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널설치 요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양국이 각각 중재인을 1명씩 임명하고, 세 번째 중재인(중재패널 의장) 후보를 3명 제안(2항) ◇ 중재패널 설치 요청 접수한 날부터 45일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제안한 후보자 명부에서 추첨으로 의장 선정

- 패널은 중재패널 설치일로부터 90일 이내 잠정보고서를 제출하고(제9.12조), 잠정보고서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최종보고서 제출(제9.13조)

※ 부패성 상품 등 긴급사안에 대해서는 절반의 기한 적용

최종보고서의 이행 (제9.14조)

- 피소국은 패널의 판정을 즉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에 의해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행할 의무를 부담

※ 최종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원 중재패널에 회부하여 합리적 기간 결정

- 불합치 제거 여부에 대해 미합의시 원 중재패널 회부 가능

보상 및 혜택의 정지 (제9.15조)

- 피소국이 패널 판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이행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제소국의 요청에 따라 보상을 위한 협의 개시
- 제소국은 보상 협의 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보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 피소국에 대해 양허 또는 그밖의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겠다는 서면 통보를 하고 통보 30일 후 정지 가능
- 피소국은 양허 또는 그밖의 혜택의 정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사안의 검토를 위해 원 중재패널 회부 가능

10

예외

일반적 예외 (제10.1조)

-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적용

참고 : GATT 제20조상의 일반 예외조치

※ GATT 제20조상 예외조치

-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호,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부족 상품의 취득·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

안보 예외 (제10.2조)

- 국가 안보상의 예외조치 허용

- 필수적 안보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비공개 가능

-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또는 국제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한 UN헌장상 의무 수행에 필요한 조치 가능

- ※ 동 조치를 취하거나 종료할 경우 공동위원회에 가능한 한 완전히 통보할 의무

과세 (제10.3조)

- 과세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협정과 여타 조세협약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세협약이 우선

- 과세조치에 적용되는 조항 : GATT 제3조에 따라 규정되는 한도에서 동 협정 제2.14조(내국민 대우)에 따라 권리 의무가 부여되는 경우

정보의 공개 [제10.4조]

- 협정상 어떤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 기업의 상업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제공 또는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비밀 유지 [제10.5조]

-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비밀로 지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받은 국가는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

11

제도 규정

공동위원회 (제11.1조)

-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필리핀 통상산업부의 장관급 공무원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자가 공동의장으로 하는 공동위원회 설치
-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에 의해 설치된 모든 위원회 및 부속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고,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하며,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문제 또는 분쟁의 해결을 모색
-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책임을 위임할 수 있고, 부속서 및 부록을 포함한 협정의 개정을 검토할 수 있음

공동위원회의 절차 (제11.2조)

- 양 당사국은 매년 정기 회기로 회합하고, 한 쪽 당사국의 요청 시 특별 회기로 회합
-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권고는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짐

위원회 및 부속기관 (제11.3조)

- 이 협정에 따라 다음의 위원회 및 그 밖의 기구가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수 있음
 - 상품무역위원회,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무역구제위원회,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

- 위원회 및 부속기관은 회합에 충분히 앞서 일정 및 의제를 공동 위원회에 알리고, 공동위원회의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보고

- 공동위원회는 위원회, 작업반, 그 밖의 기구의 임무를 변경하거나 해산할 수 있음

접촉선 (제11.4조)

- 양 당사국은 협정 적용 사안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접촉선을 지정하고 접촉선 변동 사항에 대해 상호 통보

※ 접촉선: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필리핀) 통상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

12

최종 규정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제12.1조)

- 협정문의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및 각주(Footnotes)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 구성

개정 (제12.2조)

- 양 당사국은 협정 개정에 합의할 수 있으며, 개정은 양 당사국이 필요한 모든 국내적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제12.3조)

- 이 협정에 통합된 WTO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

협정의 검토 (제12.4조)

-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5년 후 그리고 그 후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협정의 검토 수행 가능

발효 (제12.5조)

-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필요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 통보로 교환한 날의 두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다른 날에 발효

종료 (제12.6조)

-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고,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 효력 발생

정본 (제12.7조)

- 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임